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99-14제출일자: 1999. 3. 9.제출자: 거창군수

□ 개정이유

-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한 조례 통합으로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에 관한 사항이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흡수됨에 따라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독립 운영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제명을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로 개정
-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에 관한 조항 삭제

□ 개정근거

○ 경남도 행정 12200 ~ 42 ('98. 10. 20) 조례·규칙모델표준안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설치및"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내지 제10조"를 "제2조 내지 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u>설치및</u> 운영조례	제명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제1조 (설치) 저소득 계층의 자활, 자립능력을 배양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
하고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써비스를 제공	지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하기 위하여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	목적으로 한다.
<u>라 한다.)을 둔다.</u>	
제2조 (위치) 복지관은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삭 제)
333-2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	(삭 제)
장한다. 1. 저소득 세대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부업훈련	
1. 시도록 세대의 경제력 왕정을 귀면 구립군던 2. 결손, 빈곤 가정의 가정문제 상담	
3. 부녀자의 교양교육, 취미교실 운영 등 건전가	
정 육성사업	
4. 영세 취업부부의 소득 활동을 돕기위한 탁아	
사업	
5. 영세가정 자녀상담, 학습 및 생활지도, 공부	
방 제공	
6. 어린이 기능교실, 예절교실, 심신단련 등 건	
전한 성장발달 도모사업	
7. 청소년 문제의 상담, 교양교육, 레크레이션 등 전인적 인격형성 유도	
8. 청소년 기능교육, 취미교육, 독서실운영 및	
사회교육	
9. 노인문제 상담, 불우노인 결연사업	
10. 노인 사회교육 및 건전한 여가지도	
11. 심신장애자 상담 및 서비스 사업	
12. 주민 사회교육 및 각종회의, 행사, 여가선용	
시설 제공	
13. 저소득층 무료예식장 제공	
14.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원 봉사자육성	
파성 15.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종합써비스 업무	
15. 기다 자외국시를 귀한 등업까비스 입구 제4조 (관장) 복지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	(삭 제)
수의 명을 받아 관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	V 1 47
회 감독 한다	
제5조 (공무원) 복지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삭 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u>제6조</u> 내지 <u>제10조</u> (생 략)	<u>제2조</u> 내지 <u>제6조</u> (현행과 같음)